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2.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5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5월 2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26일

3.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1)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안 제1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안 제4조)

1)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안 제12조)

1)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3조)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나. 예산사항 : 자치단체부담금(연회비: 500만원)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약 동의안은 2020.5.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제출되어 2020.5.26.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8.11.11. 제226회 정례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 동의안 처리 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61개 단체였으나 현재 97개(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참여, 중랑구 제외) 단체로 확대되었고 더불어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였음.

○ 주요 개정 규약 동의안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기존 명칭에서 '한국위원회'를 삭제하여 주도적 추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장 지자체와 한국위원회의 공동사무국에서 협의회장 지자체만으로 사무국이 운영됨에 따라 공동사무국

조항을 폐지하도록 정하였음. 또한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납부된 부담금의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약을 수정·삭제·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아울러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2019.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이후 아동친화도시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외 1개소와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및 서울시 아동친화 정책박람회와 아동정책참여위원회 모의의회 개최 및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단체는 중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자료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0.6.기준).

○ 향후에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4대 기본권리[15]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구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인증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가지 세부항목을 지표[16]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바, 본 규약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15)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16)

기본원칙(10가지)	세부항목(46가지)
① 아동권리 전담부서	- 책임부서 또는 조정기구 존재 여부 등 3가지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조례, 지침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존중 여부 등 3가지
③ 아동의 참여체계	- 문제결정시 아동의 의견 반영 여부 등 7가지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비정부기구들과 적절한 협력 여부 등 4가지
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전략여부 등 4가지
⑥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 예산을 아동에게 공평 배분 여부 등 3가지
⑦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 조사	- 아동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 수집 여부 등 2가지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여부 등 8가지
⑨ 아동영향평가	- 조례, 정책, 제안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 5가지
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보육, 교육서비스 정책 수행 여부 등 7가지

7. **기타자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지자체 현황, 관계법령)

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단체 현황

지역	지 자 체 명
서울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부산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부산진구, 서구
인천 (4)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남동구
광주 (4)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3)	대구광역시, 중구,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2)	울산광역시,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8)	금산군,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경기 (14)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광주시, 의왕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5)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경북 (6)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 자료출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20.6.15.기준)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